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분양
가이드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CTC 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Copyright 2023 KCTC. All rights reserved.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분양
가이드북

CONTENTS

연구성과 소개 03

연구성과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근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생물자원 연구성과 전담기관 소개 05

생물자원 연구성과란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대상 06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기준 07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절차 08

생물자원 연구성과 홈페이지 기탁 방법 09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방법 및 NTIS 정보 연계 11

생물자원 연구성과 분양 절차 12

생물자원 연구성과 분양 방법 13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에 관한 Q&A 14

첨부자료 17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계약서 18

생물자원 연구성과 분양계약서(물질이전 계약서) 20

연구성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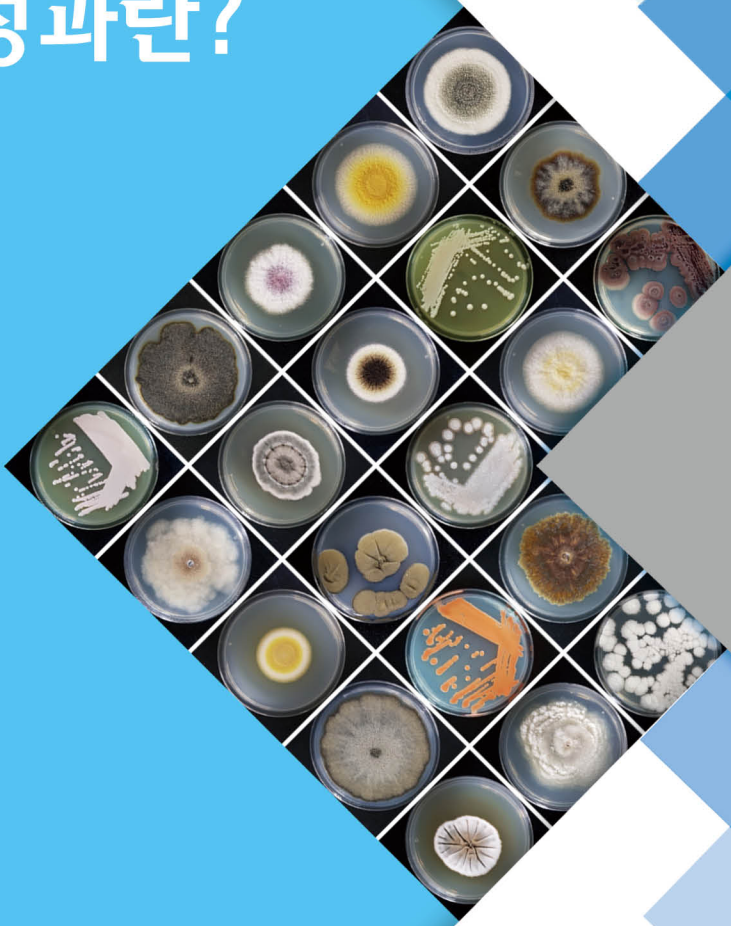

연구성과 소개

연구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 ·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신품종(정보, 실물), 표준의 열가지 성과물을 말합니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33조

제3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table>
<tr><th>연구성과</th><th>전담기관</th><th colspan="2">연구성과</th><th>전담기관</th></tr>
<tr><td rowspan="2">논문</td><td rowspan="2">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td><td rowspan="2">생명*
자원</td><td>생물자원</td><td rowspan="2">한국생명공학연구원</td></tr>
<tr><td>생명정보</td></tr>
<tr><td rowspan="2">소프트웨어</td><td>한국저작권위원회</td><td rowspan="2">신품종</td><td>신품종 실물</td><td>농업유전자원센터</td></tr>
<tr><td>정보통신산업진흥원</td><td>신품종 정보</td><td>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td></tr>
<tr><td>특허</td><td>한국특허전략개발원</td><td colspan="2">연구시설·장비</td><td>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td></tr>
<tr><td rowspan="3">표준</td><td>한국표준협회</td><td colspan="2">기술요약정보</td><td>한국산업기술진흥원</td></tr>
<tr><td>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d><td colspan="2">화합물</td><td>한국화학연구원</td></tr>
<tr><td>한국표준과학연구원</td><td colspan="2">보고서원문</td><td>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td></tr>
</table>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구성과
기타

생물자원 연구성과 전담기관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생산된 생물자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생명자원분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고시(2021.1.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는 생물자원 연구성과의 기탁 및 분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담기관 주소

56212 전라북도 정읍시 입신길 181 (신정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성과 전담부서
TEL 063)570-5626 FAX 063)570-5609 E-Mail biorp@kribb.re.kr Web https://biorp.kribb.re.kr/

생물자원 연구성과란?

국가R&D사업으로 창출된 미생물자원, 동물자원, 식물자원, 유전체자원 등의 실물 및 자원 정보를 뜻합니다.

※ 생물자원 : 미생물자원(세균, 진균, 고세균, 미세조류,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인간세포주, 동물세포주, 융합세포주, 수정란 등), 식물자원 (식물세포주, 종자, 식물추출물 등), 유전체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자원 정보

〈생명자원은 생명정보와 생물자원 (미생물, 식물, 동물, 유전체)의 실물자원이 포함됩니다.〉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대상

기탁대상 생물자원은 아래 표와 같이 미생물자원, 동물자원, 식물자원, 유전체자원 및 관련 정보 등입니다.

세균(Bacteria), 고세균(Archaea), 혐기성세균(Anaerobic bacteria), 방선균(Actinobacteria), 곰팡이(Filamentous fungi), 효모(Yeasts), 미세조류(Microalgae), 점균류(Slime molds), 동물바이러스(Animal virus), 식물바이러스(Plant virus), 박테리오파아지(Bacteriophages) 등

인간세포주(Human cell lines), 동물세포주(Animal cell lines), 융합세포주(Hybridomas), 줄기세포주(Stem cells), 설치류 배(Murine embryos), 수정란(Embryos), 정자(Sperms) 등

식물세포주(Plant cell lines), 종자(Seeds), 추출물 등

유전자클론, 플라스미드, 벡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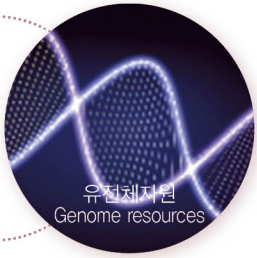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생물자원 연구성과 및 관련정보를 생명자원 연구성과 전담기관 또는 각 부처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의무적으로 기탁하여야 하며, 기탁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명	기준내용
미생물자원	–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2개 (미세조류는 사면배지를 이용한 활성배양체 2개 또는 액체배지를 이용한 활성배양체 2개)
동물자원	– 세포주 :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2개 – 동물자원 : 수정란, 정자 또는 성체 (협의) 예시) 설치류의 경우 수정란 300개 이상
식물자원	– 세포주 : 활성배양체 2개 – 종자 : 발아율 70% 이상 건조종자 300개(협의) – 추출물 : 최초 추출물 1g 이상
유전체자원	– 유전체 또는 유전자가 도입된 미생물자원(플라스미드, 벡터 등) :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2개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절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생물자원 연구성과를 기탁할 때에는 연구성과 자원 (생물자원) 종류에 따른 기탁 양식을 작성한 후,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생물자원을 기탁하여야 합니다. 기탁 양식은 연구성과 홈페이지 (https://biorp.kribb.r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을 기탁받은 연구성과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기탁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기탁된 생물자원의 상태 및 관련정보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탁을 의뢰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STEP1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기탁신청 접수(온라인)

STEP2 서류심사
기탁가능 여부 심사. 거부될 경우 보완 후, 재접수하여 재심

STEP3 자원접수
전담부서로 자원 발송 (우편, 택배, 방문)

STEP4 생존시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원에 한하여 생존시험 실시

STEP5 번호부여
생존시험 통과시 BP번호 부여

STEP6 보존
전담부서의 보존시스템을 활용한 보존

STEP7 통지서 발행
BP번호가 부여된 수탁 번호 통지서 E-mail로 발송

생물자원 연구성과 홈페이지 기탁 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

홈페이지 (https://biorp.kribb.re.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기탁 신청 → 기탁계약 동의 → 과제정보 입력 → 자원정보 입력 → 접수 완료

〈 기탁 신청 〉

〈 자원 정보 입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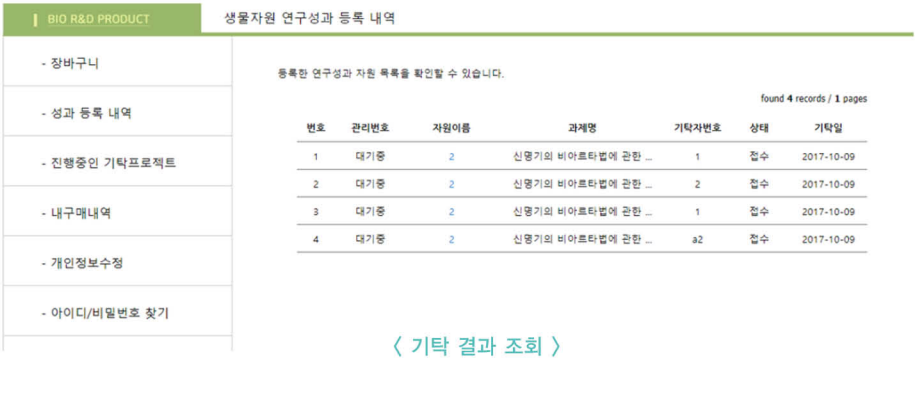

〈 기탁 결과 조회 〉

엑셀파일 업로드를 통한 신청

기탁할 자원의 양이 많은 경우 지정된 엑셀파일 형식에 미리 작성 후 기탁을 진행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자원 종류별 기탁양식은 연구성과 홈페이지의 '기탁 관련서류 다운로드'를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https://biorp.kribb.re.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기탁 신청 → 기탁계약 동의 → 기탁양식 작성 → 과제정보 입력 → 자원정보 업로드 → 접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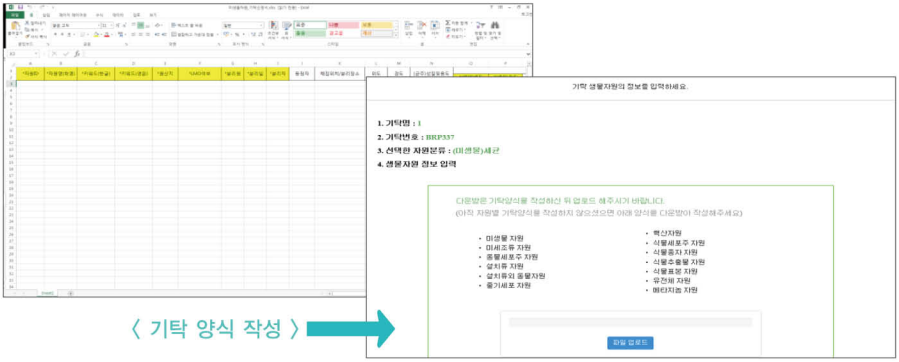

〈 기탁 양식 작성 〉

〈 자원 정보 업로드 〉

〈 기탁 결과 조회 〉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방법 및 NTIS 정보 연계

생물자원 연구성과 전담기관을 통한 기탁

- 생물자원 연구성과 홈페이지(https://biorp.kribb.re.kr/) 직접 입력 및 절차에 따라 기탁
- 생물자원 연구성과 홈페이지 엑셀 파일 형태의 대량 자원 업로드 (가이드북 10페이지 참조)
- 담당자 연락처 : 063-570-5626

기탁 연구성과의 NTIS 정보연계

-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의 개선에 따른 부처별 기탁 자원의 전담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정보 연계가 필요
- 각종 평가 시 전담기관에 등록·기탁된 성과만 관련 실적으로 인정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우수성과 100선' 선정 시, 기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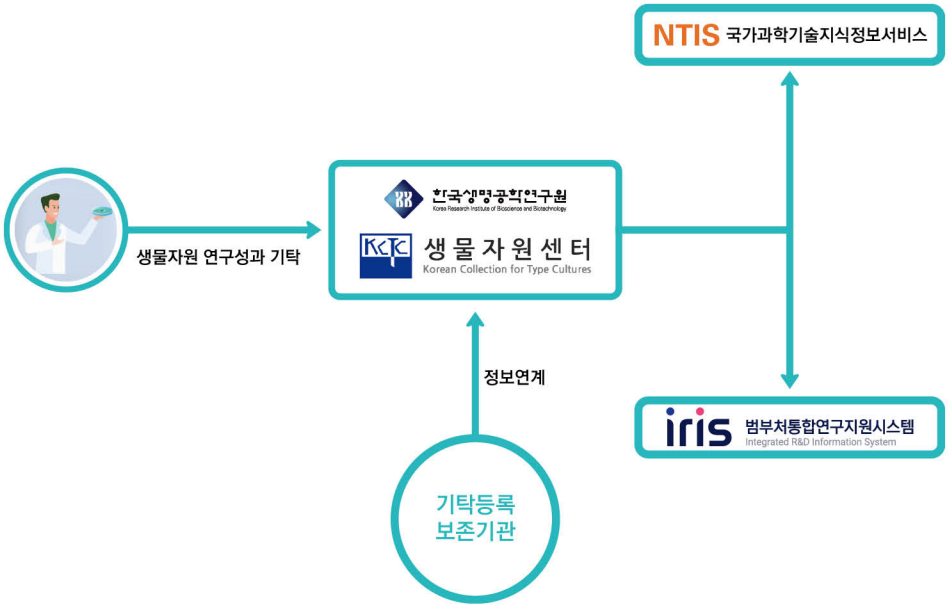

생물자원 연구성과 분양 절차

연구성과 기탁 자원이 기탁된 경우, 그 자원의 정보가 공개되며 분양 시에는 원기탁자에게 분양에 대한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탁자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개가 유보된 연구성과기탁 자원은 공개가 된 후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성과로 기탁된 자원이 일반기탁으로도 기탁된 경우는 일반자원분양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단계별 절차

STEP1 신청
온라인 상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시는 자원을 검색하여 분양 신청 (온라인 신청이 안 될 경우, 전화(063-570-5626)로 연락

STEP2 접수
전담부서에서 분양 신청 확인

STEP3 입금여부확인
입금확인 메일을 발송
※무통장 입금, 카드결제 (안심키인(법인카드 결제))가능,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STEP4 발송준비
분양자원, 분양명세서 동봉

STEP5 발송
우체국 택배로 사용자에게 자원 발송

미생물 분양가격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되며, 가격이 표시된 자원의 경우 표시된 분양가로 적용합니다.

수량	가격
1~9개	각 10,000원
대량분양	담당자와 협의

생물자원 연구성과 분양 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

홈페이지 (https://biorp.kribb.re.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자원통합 검색 → 장바구니 담기 → 계약서 동의 → 주문확인/결제 → 분양 신청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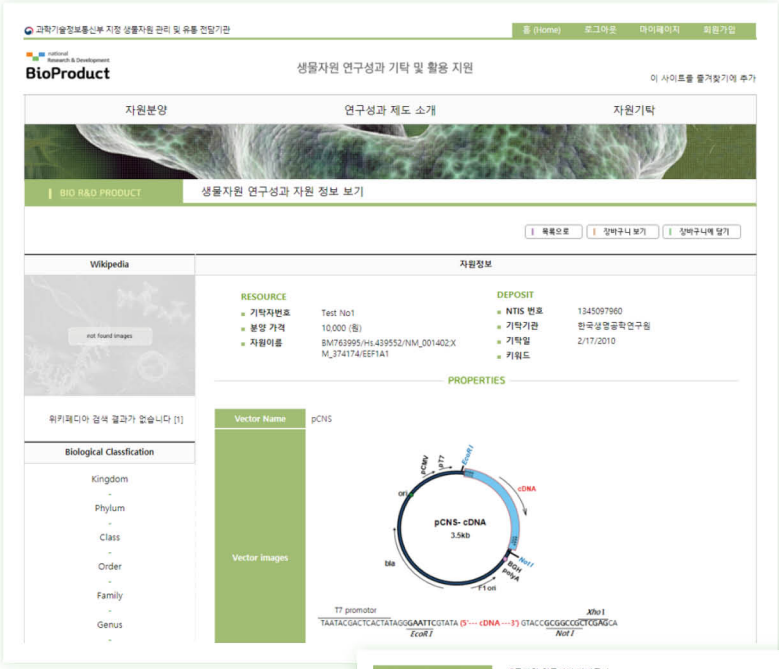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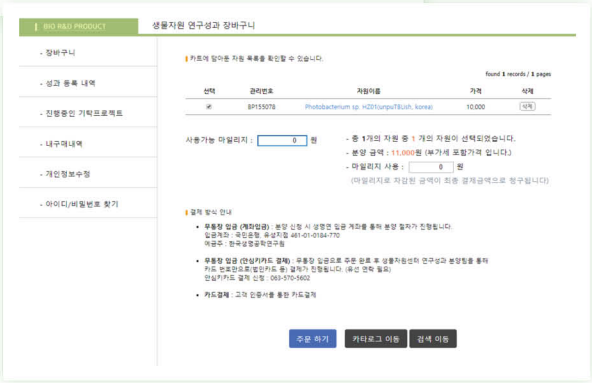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에 관한 Q&A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에 관한 Q&A

연구성과 기탁 자원으로 기탁된 경우는 그 자원의 정보가 공개되며, 분양 시에는 원기탁자에게 분양에 대한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탁자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개가 유보된 연구성과기탁 자원은 공개가 된 후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성과로 기탁된 자원이 일반기탁으로 기탁된 경우는 일반자원분양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Q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제도는 무엇인가요?

a 생명공학 기술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 연구사업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를 기탁 및 보존·분양하여 산/학/연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생물자원 연구성과는 어디에 기탁해야 하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물자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북 5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또는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종류의 생물자원을 연구성과로 기탁할 수 있나요?

a 미생물, 동물, 식물, 유전체자원이며, 상세한 기탁대상은 가이드북 6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Q 생물자원 연구성과를 기탁할 시에 어떤 형태로 기탁해야 하나요?

a 미생물, 동물, 식물, 유전체자원에 따라 기탁형태가 상이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북 7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에 관한 Q&A

Q 기탁된 자원은 모두 공개가 되나요?

a 기탁된 자원은 정보 공개가 원칙이지만 기탁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기간 유보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공개 원칙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대상자원	정보공개기준	정보공개예외	비공개 기간
전담기관 기탁자원	원칙적 공개	1. 보안과제	1년 단위(최대 3년) (과제수행기간에는 미적용)
		2. 논문 게재	
		3. 기탁자원이 수행 중인 과제에 연계	
		4. 기타 기탁자 요청 (협의)	

Q 생물자원 연구성과의 기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구성과 홈페이지(https://biorp.kribb.re.kr/)의 자원기탁 메뉴를 통해 자원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탁절차는 가이드북 8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Q 과제책임자가 검색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용역사업, 위탁사업 등 NTIS에서 과제 책임자 검색이 되지 않는 과제는 해당과제의 상위과제명을 검색하여 기탁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구성과 분양시 피분양자에 대한 정보를 기탁자가 알 수 있나요?

a '생물자원 연구성과 분양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북 20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Q 연구성과 기탁 자원에 대하여 기탁계약서에서 명시된 권리배분 항목 이외의 다른 조건을 협의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계약서' 제17조에는 상호협의 조항이 있으며,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의 권리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첨가하여 협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상호협의) 전담기관과 기탁자는 상호협의에 의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부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계약서
생물자원 연구성과 분양계약서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계약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함)과 (주소) _____,
(이하 "기탁자"라 함)은 20 년 월 일로 _____ 대한 다음과 같은
생명자원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계약서 (이하 "본 계약"이라 함)를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연구성과 기탁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자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시행령'에 따라 부처별 전담기관에 의무 기탁해야 한다.

②생명자원 (생물자원) 연구성과 전담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고 생명자원 (생물자원) 연구성과 전담부서는 생물자원센터이다.

③기탁자란 생명자원 (생물자원) 연구성과 (이하 "자원"이라 함)를 전담기관에 기탁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전담기관과 기탁자 간의 기탁절차, 자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원의 기탁)

①기탁자는 전담기관에서 기탁받을 수 있는 자원을 기탁할 수 있으며, 기탁자는 전담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탁할 자원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에 대한 전담기관의 권리 및 이용)

①전담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기탁된 자원을 배양, 복제, 증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취지 및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시험 목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자원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피분양자는 전담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기탁자와 피분양자의 협의를 중계할 수 있다.

제5조(기탁자의 권리와 의무)

①전담기관은 기탁하는 자원의 소유권이 기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②기탁자는 기탁하는 자원이 기탁신청서의 정보와 동일하며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③기탁자는 기탁하는 자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지정된 생물안전위험군등급 3 또는 더 높은 위험군이 아님을 보증해야만 한다.

④기탁자는 대한민국 법령, 국제조약, 검역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기탁자는 기탁하는 자원이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고위험 병원체가 아님을 보증해야만 한다.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 동물, 식물, 수산물 등 검역에 대해 규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기탁자는 기탁하는 생물자원의 배양, 복제, 증폭 등의 이용 또는 분양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⑥기탁자는 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담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기탁자는 자원을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절차에 의해 취득했어야 하며, 기탁자는 자원의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 직접개발 □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
□ 권리와 함께 구매 □ 기타
(기타의 경우 출처에 대해 기술: _____)

제6조(자원의 운송)

①기탁자는 자원이 오염되지 않고, 생존한 상태로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7조(자원 기탁의 승인 및 거절)

①전담기관은 자원의 순수성과 생존성을 확인한 후에 자원의 기탁을 승인하며, 이 후, 자원의 보관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자체 규정에 의해 자원의 기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기탁을 요청한 자는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

제8조(자원의 유지)

①전담기관은 기탁된 모든 자원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기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탁자는 통보된 고유번호로 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기탁자의 권고를 참고로 생물안전위험군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기탁자는 기탁한 자원에 대해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전담 기관으로 연락해야만 한다.

제9조(기탁 수수료)

①실비 상당액의 운송비는 기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정보공개)

①기탁된 자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기탁자의 요구에 의해 일정 기간 공개가 유보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자에 대한 정보를 기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 등)

①기탁된 연구성과 기탁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 배분은 기탁자 및 피분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상기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는 금전적 청구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다.

제12조(자원의 반환 및 폐기)

①전담기관은 다음의 나열된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탁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탁자에게 반환 및 폐기할 수 있으며, 기탁자는 이를 승낙해야만 한다.

1.특정 자원의 보존이 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

2.공중 보건에 관련되어 인체 혹은 동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3.장기보존이 되지 않는 자원 (식물종자, 미세조류 등)으로서 자원의 생존기간이 지나 생존율 또는 생물학적 활성이 상실된 자원의 경우

4.기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상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자로부터 자원의 반환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전담기관은 고압·고온 멸균법 또는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그 자원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면책)

①전담기관은 기탁 자원 및 기탁자와 피분양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4조(계약만료)

①기탁자와 전담기관의 계약은 다음의 나열된 항목에 해당할 경우 만료된다.

1.기탁된 자원이 사멸, 오염, 변형, 퇴화된 경우

2.전담기관이 제12조에 따라 기탁된 자원을 기탁자에게 반환할 경우

3.전담기관이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탁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12개월 이상 기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②전담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탁된 자원을 이용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다.

제15조(통지)

①전담기관은 기탁자가 사전에 제공한 연락처로 모든 통지를 송달한다.

②기탁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전담기관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전담기관의 착오는 기탁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③기탁자에게 통지 후 6개월간 회신이 되지 않을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전담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법률 및 조약)

①이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②연구성과기탁 자원의 기탁 및 분양은 '국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제17조(상호협의)

전담기관과 기탁자는 상호협의에 의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부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생물자원 연구성과 분양계약서 (물질이전 계약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함)과 (주소) _____,
(이하 "피분양자"라 함)은 20 년 월 일로 _____ 대한 다음과 같은
생명자원 (생물자원) 연구성과 분양계약서 (이하 "본 계약"이라 함)를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기탁자란 생명자원 (생물자원) (이하 "자원"이라 함)을 전담기관에 기탁하는 연구자이며, 전담기관은 기탁한 자원의 수탁자가 된다.

②피분양자란 자원을 전담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절차에 의해 분양받은 자이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전담기관과 피분양자 간에 분양받은 자원의 이용, 취급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원의 사용범위)

①전담기관으로부터 분양된 자원 및 제공된 자원정보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연구 및 시험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피분양자가 자원 및 자원에서 발생한 파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기탁자와 상호협의하여야하고 그 결과는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분양자는 분양된 자원을 전담기관의 허가 없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피분양자의 의무 및 책임)

①피분양자는 제3조에 언급된 자원 사용범위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해야 한다.

②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자원을 적합한 시설에서 자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숙련자에 의해 사용될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분양자가 생물안전위험군 2등급의 자원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BioSafety Level(BSL) 2 균주 분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피분양자가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개발 실험하기 위해서는 「유전체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⑤피분양자는 자원 사용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령, 국제조약, 검역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피분양자가 분양받기를 원하는 자원이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이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 동물, 식물, 수산물 등 검역에 대해 규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분양자가 재외자일 경우는 자원의 수출입, 배포, 사용에 대해 전담기관이 속한 국가와 피분양자가 속한 국가들의 법률, 검역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피분양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생물자원을 기탁자의 허가 없이 자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재분양, 이전, 양도 혹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⑦피분양자는 분양된 자원의 수령, 취급, 저장, 폐기, 사용 및 오용에 대한 모든 위험성방지 및 자원과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제5조 (분양)

전담기관은 지정된 분양절차에 따라 자원을 피분양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①전담기관은 자원을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피분양자에게 유상으로 분양한다.

②기탁자로부터 피분양자에 대한 정보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전담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자에 대한 정보를 기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분양시의 대가 및 운송)

①전담기관은 분양절차에 따라 자원에 대한 분양 수수료가 입금된 후 자원을 분양한다.

②실비 상당액의 운송비는 피분양자가 부담한다.

③자원을 분양 배송할 때는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국제 안전성 규칙에 따라 자원을 포장하여 배송한다.

제7조 (보증)

전담기관은 본 계약에서 언급되어지지 않는 사항은 보증하지 않는다.

①전담기관은 분양한 자원이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하 "보증기간"이라 함) 생존력과 순도를 보증한다.

②제7조제1항의 보증기간은 분양된 자원에 부착 혹은 표기된 유효기간에 의해 변동되지 않는다.

③피분양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전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관방법 및 실험방법에 따라 취급하지 않았을 경우, 생존력, 순도의 문제에 대해 전담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④전담기관은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사용방법 및 기타 관련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⑤전담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1. 분양받은 자원에 존재할 수 있는 제3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침해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권리
2. 분양받은 자원의 특정 혹은 통상의 용도에의 적합성의 여부
3. 기탁자에 의해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의 안전성

제8조(지식재산권)

①피분양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얻어 컨퍼런스, 논문, 출판물 등에 공개할 경우, 자원의 출처로 전담기관을 기재해야만 하며 자원으로부터 얻어진 관련 정보 및 과학적 결과물 (논문)에 자원의 연구성과 번호와 원산지를 언급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피분양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기탁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시, 자원의 기탁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피분양자는 제3조에 언급한 자원 사용범위의 제약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해야 한다.

④피분양자는 자원의 출처에 대한 승인과 모든 출판물에 대한 권리를 전담기관 및 기탁자가 갖고 있음을 Micro-Organisms Sustainable use and Access Regulatio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MOSAICC),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국제규정에 따라 동의해야 한다.

⑤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및 제3자의 배상청구 (물질수령, 취급, 보관, 이동, 처분, 사용, 오용, 기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 포함)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분양자에게 있다.

제9조 (면책)

①피분양자는 자원의 잠재적 혹은 현존하는 위험 및 필요한 주의의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원을 취급할 의무가 있으며, 전담기관은 피분양자가 자원의 수령, 취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피분양자 혹은 제3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상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전담기관은 분양된 자원의 사용 또는 보유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의 위반 및 해지)

①전담기관은 피분양자가 위의 동의의무를 고의적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더 이상의 자원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피분양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본 계약상의 정상적인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분양자는 보유 중인 자원을 전담기관에 반환 혹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자원이 피분양자에게 운송되는 도중에 파손되었거나, 피분양자가 자원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피분양자는 제7조제1항에 명시된 보증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송 피해 접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전담기관은 피분양자에게 자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1조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자원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재량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③피분양자가 제3조와 제4조의 자원사용의 범위 및 피분양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담기관 또는 기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분양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법률 및 조약)

①이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②연구성과기탁 자원의 기탁 및 분양은 '국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제13조 (물질이전계약서의 개정 및 효력)

①물질이전계약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고, 공고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물질이전계약서의 효력은 자원 분양신청 시점부터 적용된다.

전라북도 정읍시 입신길 18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연구성과 기탁/분양 문의 : 063)570-5626
연구성과 홈페이지 : https://biorp.kribb.re.kr/

생물자원센터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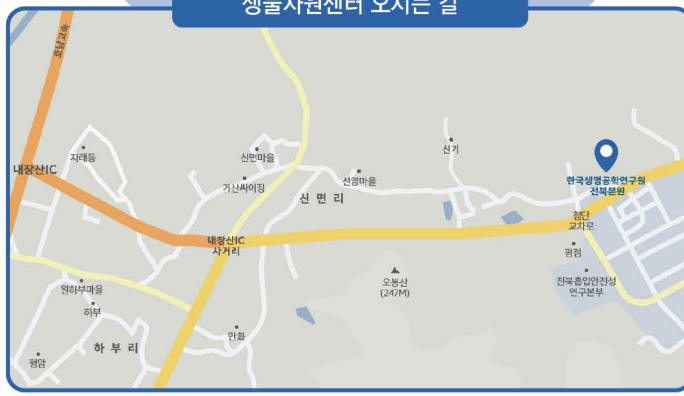

- 자 동 차 : 내장산IC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약 4분)
- 대중교통 : 정읍역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약 15분)